

6. 標準賃貸保證金 및 標準賃貸料

建設部告示 第1993-399號, 1993. 10. 14

1. 적용범위 : 영구임대주택중 청약저축가입자(철거세입자 포함)가 입주하는 주택과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현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
2. 표준임대보증금 :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건설원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.
이 경우 당해주택의 건설원가는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하되, 주택건설주체가 택지를 직접 개발한 경우의 택지비는 조성원가(당해지구내에 유사용지를 공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, 그 공급가격)을 기준으로 한다.
3. 표준임대료 : 표준임대료는 당해주택건설원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리(연8.5%)와 감가상각비, 수선유지비, 화재보험료,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(1) 당해주택건설원가 : 표준임대보증금의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
 - (2) 감가상각비 : 건물내용연수 50년, 잔존가액 10%, 정액법 적용
 - (3) 수선유지비 : 연간 건물가액의 0.5%
 - (4) 화재보험료(재해보험료) 및 국민주택기금이자 : 실제 지급금액
 - (5) 대손충당금 : 감가상각비, 수선유지비,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의 1%
4.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 : 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호전환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연 10%를 적용한다.
5.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중액제한 : 이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

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등의 증액
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.

부 칙

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

를 모집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
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
택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
1993년 9월 20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
를 모집한 주택은 이 고시에 의한 표
준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적용한
다.

몰래버린 쓰레기가 공해되어 내게온다